

4단계 BK21 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인문사회 분야)

---

**문화유산 스마트기술 융합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집**

---

2021. 02. 01



**고려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4단계 BK21 사업 운영 규정

2021. 02. 01 제정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BK21 사업“이라 한다)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에 따라 문화유산 스마트기술 융합 교육연구팀(이하 “연구팀”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BK21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연구팀에 소속 및 참여하는 구성원이 준수해야 하며, 연구팀 운영 전반에서 기준이 된다.

**제3조(적용기간)** 이 규정의 적용 기간은 본 사업이 시작되는 2020년 9월 1일부터 종료되는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2장 연구팀 구성 및 운영

**제4조(연구팀 구성)** 연구팀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기준 요건에 준하여 연구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연구팀의 구성원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제5조(연구팀장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팀장은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제1조의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

② 연구팀장의 자격, 대리, 교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연구팀의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최소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팀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연구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연구팀장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
  1. 연구팀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팀 지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팀의 자체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교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사항
  5. 교수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6.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8.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7조(자체평가위원회)

- ① 연구팀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팀 운영을 위하여 연구팀 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연구팀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팀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2.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연구팀 운영 개선

## 제 3장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

### 제8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 ① 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고미술사학과 대학원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한다.
- ② 참여교수 가운데 연구팀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연구팀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 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휴직 혹은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간 파견 중인 교수
2.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상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 제9조(참여교수의 의무 및 지원)

- ① 참여교수는 연구팀의 목적에 맞는 학술연구와 활동 및 학생지도에 노력해야 한다.
- ② 참여교수는 매년 2편 이상의 논문 실적에 준하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다만 연구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 ③ 참여교수는 매 차년 사업 종류 2주전까지 해당 년도 연구업적목록과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④ 참여교수는 해당 년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 ① 연구팀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증원할 경우에 연구팀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해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 ④ 연구팀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총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4장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활용

#### 제11조(신진연구인력)

- ① 본 연구팀의 목적에 부합한 전공분야의 박사후 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소속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은 준용하여 채용·지원한다.
- ② 박사후 과정생의 채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의 최초 채용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로 한다.
  2. 박사후 과정생은 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팀에서는 박사후 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③ 계약교수의 채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교수의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팀에서는 계약교수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4. 계약교수는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로 할 수 있다.
- ⑤ 신진연구인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연구팀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
  2. 연구논문을 등재(후보)지에 연 1편 이상 게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다만 연구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3. 연구팀에서 요청 시 연구팀 관련 연구과제(외부용역과제 포함) 및 학술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4. 연구팀에서 요청 시 본교의 시간 강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 ⑥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팀 내 교육·연구 수행에 맞는 적절한 시수와 별도 강의료 지급은 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신진연구인력은 본 연구팀의 운영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 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⑧ 신진연구인력은 해당 년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5장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 제12조(참여대학원생)

-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4대 보험 미가입자여야 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참여교수 변경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연구팀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시 연구팀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의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하는 각종 학술연구활동(현지조사, 학술

세미나, 콜로키움, 출판물 간행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본교 『연구 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신상 및 신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와 연구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 지원 내역(통장사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연구팀장의 승인을 받아 (타)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내·외 학기당 주 6시간 이내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실적을 쌓았을 경우 지원(연구장학금, 한국연구재단 인정 학술논문 학회지 게재료, 한국연구재단 인정 학술대회 발표비, 해외 조사 참가비,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연구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팀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은 월 70만원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은 월 130만원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은 월 100만원 이상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매년 3월과 9월에 학기 별로 선발한다.

③ 참여교수별로 지도학생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의 지원대학원생이 선발되도록 한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가운데 연구 실적과 연구팀 기여도가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1. 연구실적은 직전 학기의 논문게재, 학회발표, 저서 집필, 수상실적, 연구과제 참여 실적 등을 통해 평가한다.
2. 연구팀 기여도는 연구팀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각종 사업(현지조사, 학술세미나, 콜로키움, 출판물 간행 등)의 참여도를 통해 평가한다.
3. 지원대학원생은 입학 후 첫 학기 신입생보다는 재학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본 연구팀의 석사과정 참여대학원생이 박사과정 신입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연구실적과 연구팀 기여도의 항목과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과 연구팀 운영기여도를 고려하여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의 수

를 증감할 수 있다.

1.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과 연구팀 운영 기여도 실적은 [별첨 1. 4단계 BK21 사업연구팀 참여교수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과 연구팀 운영 기여도 실적은 1년 단위로 평가하여 그 이듬해 지원대학원생 선발 시에 적용한다.

#### 제14조(학술활동 의무)

- ①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되면 아래의 학술 활동을 권장한다.
  1. 박사과정생과 박사과정수료 후 연구생의 경우에는 연구논문을 등재후보 또는 등재학술지에 연 1편 이상 투고하여 게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논문게재료는 1편당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연구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논문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2. 박사과정생과 박사과정수료 후 연구생의 경우에는 국제학술대회에 연 1회(지도교수와 공동발표 또는 단독 발표) 발표하도록 노력한다.
  3. 석사과정생·박사과정생·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의 경우에는 연구팀이 발간하는 연구서의 원고를 집필할 의무가 있다.
  4. 지원대학원생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② 참여대학원생은 매 학기(3월/9월) 시작 2주일 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기 종료 2주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제 6장 성과급 지급 기준

#### 제15조(성과급)

- ① 연구팀 구성원의 연구 능력과 학문 수준을 향상시키고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 ②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에게는 모든 연구 실적에 대해 연구팀이 마련한 연구지원금 지급 기준표 [별첨 1, 별첨2]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을 비롯한 참여교수에게 1년 동안의 연구실적을 [별첨 1. 4단계 BK21 사업연구팀 참여교수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매년 2월 성과급을 지급하되, 월급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참여·지원대학원생에게 매 학기 연구 실적을 [별첨 2. 4단계 BK21 사업 연구팀 대학원생 연구성과급 지급 기준표]에 의거, 점수로 산출하여 매 학기 8월과 2월 성과급을 지급한다. 다만,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개별 성과급은 월별로 지급되는 연구 장학금을 포함해 석사과정은 180만원을, 박사과정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참여교수 및 참여·지원대학원생과 공동 연구를 통한 연구 실적에 대해서는 연구팀 기

여도를 반영, 단독 실적에 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외의 공동 연구에 대해서는 1/N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 제 7장 국제협력경비 지원

### 제16조(국제협력경비)

- ① 참여인원의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해외학자 초빙 및 기타 국제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 ② 이 조항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34조 (국제화경비)를 참고하여 연구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7조(해외단기연수)

- ①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지원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 현지조사, 현지조사 관련 연계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 ② 연구팀 단위의 조사일 경우 인솔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으로 구성한다.
- ③ 해외단기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본교의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항공료, 체재비 등)한다.
- ④ 해외단기연수에 참여한 참여·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2.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세미나 참석
  3. 해외단기연수 이후 결과보고서와 자료(사진, 녹음 자료 등) 제출
- ⑤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평가항목과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첨 3. 해외 연수신청서 평가 항목 및 선발 기준]과 같다.

### 제18조(국제학술대회)

- ① 국제학술대회에서 참여·지원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발표를 할 경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발표비, 체재비, 항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참여교수의 경우 참여·지원대학원생과 공동 발표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에 한하고, 공동 발표일 경우에는 여비 지원을 2인 이내로 한정한다. 학술대회 지원 항목은 항공료, 참가비 및 등록비, 체류 기간 동안의 여비를 말하며, 학술대회 일정에 한해서 지급한다.
- ③ 국제학술대회 요건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1/3 이상)가 되어야 한다.

④ 4단계 BK21 사업 인문사회 분야의 타 연구팀이나 연구팀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경우, 경비 지원은 1/N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개최를 하는 연구팀 또는 연구팀 간의 협약에 따른다.
2. 연구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경우 외국인 발표자 또는 토론자에게 항공료(실비), 체재비(실비), 발표비, 참가비, 등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국연구재단 및 본교 연구비관리규정 기준을 준수한다.

#### 제19조(해외 석학 초청)

- ①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은 참여인력의 국제적 연구 안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해외 석학 초청 대상자는 연구팀에서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 ③ 해외 석학 초청 경비(여비 및 체제비)는 본교 연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1. 특강료는 2시간 기준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를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그 밖의 시간 초과에 관해서는 본교 연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제 8장 학술활동경비 지원

제20조(대학원세미나) 참여·지원대학원생의 자발적인 학술활동을 독려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계, 하계 대학원 세미나의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항목과 지원경비 기준은 연구팀의 예산에 따른다.

#### 제21조(국내학술활동)

- ① 연구팀 구성원의 활발한 학술활동(국내 현지조사, 학술대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 ② 현지조사와 학술대회 참가 여비는 본교 연구비 규정에 의거하되, 연구팀의 자체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2조(학술세미나)

- ① 지원대학원생은 자율적으로 학술세미나를 만들어 운영할 의무가 있다. 지원대학원생은 최소 1개 이상의 학술세미나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학술세미나 개최 시 매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연구팀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③ 연구팀에서는 학술세미나 운영에 필요한 학술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 제23조(콜로키움)

- ① 참여교수별 콜로키움을 구성하여 지도학생들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매

- 학기 종료 시 전체 학과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한 학기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 ② 콜로키움 개최 시 매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연구팀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③ 연구팀에서는 콜로키움 운영에 필요한 학술활동경비를 지원한다.

#### **제24조(전문가 활용)**

- ① 연구팀에서는 참여·지원대학원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취업특강 또는 취업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단, 강사료 지급은 본교 연구비 규정에 따른다.
- ② 연구팀에서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번역, 교정비 등을 지원한다.

### **제 9장 부칙**

**제25조(시행일)** 이 규정의 시행은 4단계 BK21 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6조(대체)**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지침 및 소속 대학의 규정을 참조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본 연구팀 규정 개편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 4단계 BK21 사업 연구팀 참여교수 연구 성과급 기준표

2021. 02. 01 기준

평가기준	항목		세부항목	점수
연구성과	논문게재	국제저명 (한국연구재단기준)	단독 게재	편당 100점
			공동 게재	편당 50점
		국제 기타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편당 30점
		국내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편당 30점
	학술발표	국제대회	단독_전문	편당 20점
			단독_초록	편당 20점
			공동_전문	편당 20점
			공동_초록	편당 15점
		국내대회	단독_전문	편당 8점
			단독_초록	편당 5점
			공동_전문	편당 4점
			공동_초록	편당 3점
	학술저서	외국어	단독	편당 150점
			공동(2~3인)	편당 75점
			공동(4인 이상)	편당 30점
		국어	단독	편당 100점
			공동(2~3인)	편당 50점
			공동(4인 이상)	편당 20점
참여성과	연구팀 기여도	연구팀 주최 국제대회 사회, 토론, 통번역		건당 7점
		연구팀 주최 국내대회 사회, 토론		건당 5점
		기타(행사 조직, 강연자 섭외, 가이드 등)		건당 3점
		연구용역과제		건당 2점
		인력양성(졸업생 배출)		1인당 5점

## 4단계 BK21 사업 연구팀 대학원생 연구 성과급 기준표

2021. 02. 01 기준

평가기준	항목		세부항목	점수
절대평가	논문게재	국제저명 (한국연구재단기준)	단독 게재	편당 100점
			공동 게재	편당 50점
		국제 기타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편당 30점
		국내	단독 게재	편당 50점
			공동 게재	편당 30점
	학술발표	국제대회	단독-전문	편당 20점
			단독-초록	편당 20점
			공동-전문	편당 20점
			공동-초록	편당 15점
		국내대회	단독-전문	편당 8점
			단독-초록	편당 5점
			공동-전문	편당 4점
			공동-초록	편당 3점
	학술저서	외국어	단독	편당 150점
			공동(2~3인)	편당 75점
			공동(4인 이상)	편당 30점
		국어	단독	편당 100점
			공동(2~3인)	편당 50점
			공동(4인 이상)	편당 20점
상대평가	교수평가	학기 별 연구계획서의 완성도		최대 10점
		콜로키움/세미나 참석 및 발표		최대 10점
		연구팀 행사 참여도 및 성실함		최대 10점
		타 연구 용역 과제 참여		최대 5점
		콜로키움/워크숍, 연구계획, 해외단기연수를 통해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 게재		최대 20점
		지도교수 주관적 평가		최대 20점

<내규 별첨 3>

## 4단계 BK21 연구팀 해외단기연수 신청서 평가 항목 및 선발 기준

2021. 02. 01 기준

	평가항목	배점(총점 100점)	
심사내용	연구과제의 학술적 가치	30점	
	연수의 준비 현황	20점	
	연수활동의 타당성	20점	
	활용과 기대효과	20점	
	연수 경비의 적절성	10점	
등급평가 및 선발			
A (선발)	B (보완 후 선발)	C (보완 후 재심사)	D (불가)
100~90	89~80	79~70	69~0